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-

1. 경 과

- 가. 발의자 : 최재욱 의원 외 5인
- 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7일
- 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4년 3월 24일
 -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출석일시 : 2004. 3. 24 ~ 3. 26(3일간)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 이상 간부 공무원

다. 검토의견

-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
- 평소 의원님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이 요구됨.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37조(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질문 응답)

-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

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

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(개정 2000. 6. 2)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,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